

서울남부지방법원

판 결

사 건 2022고정947 재물손괴
피 고 인 배준호 (500000-00000000)
주거
등록기준지
검 사 허○○(기소), 박○○(공판)
변 호 인 변호사 이○○(국선)
판 결 선 고 2023. 8. 9.

주 문

피고인은 무죄.

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이 유

1. 공소사실

피고인은 2021. 7. 7. 19:39경 서울 강서구 개화길 52 '강서구 상사마을 어르신 사랑방' 담벼락 기둥에 피해자 정○○가 설치한 '개화동 상사마을 임시주민총회 알림', '정○○ 자치위원장 대법원에서 인정한 확정결정' 문구가 적힌 시가 미상의 현수막 2개 (이하 '이 사건 현수막'이라 한다)의 매듭 부분을 끊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

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.

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.

2. 판단

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의 매듭 부분을 끊은 사실이 없고, 바닥에 떨어진 현수막을 수거해 보관하다가 경찰에 제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.

공소장(증거목록 순번 4번) 및 2022. 11. 15.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판결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, 피고인이 2022. 10. 6.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, 위 판결 중 재물손괴죄의 범죄사실은,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 하루 전인 2021. 7. 6. 19:00경부터 같은 날 20:18경 사이에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이 사건 현수막과 같은 내용의 현수막 2개의 매듭 부분을 끊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(이하 '선행행위'라 한다)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, 먼저 피해자가 선행행위 후 이 사건 범행일시 이전에 이 사건 현수막을 다시 게시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,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을 수회 고소하는 등 두 사람 사이에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었던 점,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해자가 선행행위 후 이 사건 현수막을 다시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, 사건현장 CCTV 재촬영 동영상 CD의 영상만으로는 피해자가 2021. 7. 7. 18:37경 이 사건 현수막을 다시 게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선행행위 후 이 사건 범행일시 이전에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

하였다고 하더라도,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 이 사건 현수막의 매듭을 끊은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,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, 검사가 제출한 입건전조사보고서(범행장면 확인 및 피조사자 특정)(증거목록 순번 15번)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떼어 가져가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고, 사진 하단에는 CCTV 촬영일시가 '2021. 7. 7. 19:39경'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(사진 자체로 촬영일시를 확인할 수 없다),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(피해자 정○ ○ CCTV 촬영사진 첨부 및 죄명 변경)(증거목록 순번 1번)에는 2021. 7. 7. 19:45경 피고인이 바닥에 펼쳐져 있는 현수막 2개를 접는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고(사진 자체로 촬영일시를 확인할 수 있다), 위 사진의 영상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, 위 입건전조사보고서에 기재된 CCTV 촬영일시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입건전조사보고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,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이 사건 현수막의 매듭을 끊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,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판사 이○○ _____